

제326회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7월11일(금)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
3.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 | | |
|-------------------------------|---|
| 1. 2013회계연도 결산 | 1 |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
|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1 |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류재근 입법조사관입니다.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생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보고는 7월 21일 신임 장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금년도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 두 차례로 분리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7월 15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되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오늘 의결하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간의 자세한 결정이 어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권성동 간사하고 이인영 간사께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문제는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가. 고용노동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2건을 먼저 일괄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심사는 신임 장관을 출석

시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7월 9일 채택하였으나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하남 장관으로부터는 인사말만 듣도록 하고 결산심사는 차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하남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용노동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증가세의 둔화가 우려되었고 각종 노동현안들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하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업자 수가 연초 전망치를 상회한 39만 명이 증가하였고 고용률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개선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16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0.7%인 94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 2조 851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3억 원, 예비비 44억 원이 포함되어 총 2조 9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90.5%인 1조 8937억 원을 지출하였고 467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2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5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용보험기금 8조 2511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6조 744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6729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3807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5323억 원 등 총 16조 5816억 원을 조달 운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추진한 2013년도 주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여성·중장년 등 정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통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및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 및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해소 강화, 임금체불 근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옥 차관입니다.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홍 고용정책실장입니다.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입니다.

박화진 인력수급정책국장입니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입니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입니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입니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김종열 정책기획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서정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기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입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박종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장의성 한국잡월드 이사장입니다.

진경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획처장입니다.

(기관장 및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결산 내용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방하남 장관님께서는 지난해 3월에 취임한 이후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중요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신 데 대하여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장관으로서의 국정운영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우리 고용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더 큰일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심경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재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반

회계를 비롯한 네 가지 회계결산 내역 그리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5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같음을 하고, 6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원 총괄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쳐서 총 재원 규모는 23조 703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9.2%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 지출 규모는 18조 4753억 원으로 예산이 1조 8937억, 기금이 16조 5816억 원입니다.

재원별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이 43.8%, 고용보험이 40.3%, 그리고 일반회계, 임금채권 등의 순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총 21조 6110억 원 중 산재보험이 48%, 고용보험이 44.1%, 이외에 임금채권기금 장애인기금 근로복지기금의 순서입니다.

8쪽, 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보조금 정산 후의 반환금의 증가와 과태료 부과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941억 원으로 수납률은 80.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이나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납률 제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25억 원 수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 2조 851억과 이월액, 예비비 등을 합쳐서 총 2조 928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1조 8937억 원으로 90.5%를 집행하여 집행률은 전년보다 1.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467억, 불용액은 1524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10쪽,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61억 원으로 전년보다 23.3% 정도 증가하였고 이 중 수납액이 939억입니다.

수납 내역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262억,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222억 원으로서 주요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 예산 부족, 납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이 당초 2조 291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합쳐서 2조 368억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1조 83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3%를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정책 사업에 한 57.3%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이외에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지원, 노사협력사업, 취약근로자권리구제사업 그리고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 등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67억 원으로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451억, 고용영향평가사업 5억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51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한 279억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가 846억,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이 194억, 글로벌취업지원이 86억 또 취업성공패키지, 중견인력채취업지원 등의 순입니다.

불용 사유는 아래에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쪽에서 16쪽은 방금 말씀드린 전용과 이월 그리고 불용액의 세부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및 소속 위원회의 세종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편성된 예산 44억 중에서 3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작년 12월에 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18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5억 2300만 원 중 1억 5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5억 6000만 원 중 457억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진폐위로금에 429억, 건강진단에 14억 7800만 원 등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0쪽,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지역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으로 8억 1900만 원을 지자체에 경상이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 마지막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제주고용센터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사업비 및 운영비로 85억 6400만 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전체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부 소관의 5개 기금 총 징수결정액은 20조 926억 원 수준이며 전년도보다 한 1.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 수납액은 16조 5816억 원이고, 수납률은 82.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3조 3316억, 또 불납되어서 결손 처리한 금액은 1793억 원 수준입니다.

22쪽, 총 지출결산입니다.

저희 5개 기금의 총 지출액은 16조 5816억 원 이고 사업비가 11조 8537억, 또 여유자금은 4조 727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3쪽의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조 2631억 원으로서 보험료가 7조 8000억 정도 그리고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가산금, 연체금, 또 일반회계전입금 272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수납된 금액은 8조 2511억 원으로 수납률은 89.1%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82억, 미수납된 금액은 9938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 고용보험기금의 지출결산 내역, 26쪽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9조 5413억 원이고 이 중에 사업비가 6조 4812억, 여유자금운용은 1조 7699억 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비는 고용정책사업에 4조 2300억, 능력개발에 1조 2700억 등에 주로 사용하였고, 또 모성보호 등 고용평등에 8760억, 장애인사업에 30억, 기타 지원사업에 1012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억 그리고 불용액은 2547억 원 수준입니다.

28쪽,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입니다.

산재보험기금의 징수결정액은 8조 1050억 원으로서 보험료가 6조 3585억, 이자수입, 가산금, 연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수납된 금액은 6조 7446억 원으로서 수납률은 83.2%입니다.

불납돼서 결손 처리한 금액은 454억, 미수납액은 1조 3150억 원 수준입니다.

산재보험의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30쪽을 보시면 지출계획 현액은 10조 3717억 원으로서 사업비는 4조 6097억, 또 여유자금은 1조 8348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의 사업비는 총 4조 6097억인데 크게 산재보험사업과 산재예방사업에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에 3조 7954억, 그 이외의 사업에 1891억 원이고, 산재예방사업은 클린사업 창조성에 1014억, 또 사고성재해예방에 488억, 예방시설용자 등에 1821억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953억 원 수준입니다.

31쪽,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375억 원으로서 경상이전수입 즉 사업주부담금, 사업주변제금, 연체금, 가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징수결정된 금액 중 수납액은 6729억 원으로서 수납률이 38.7%로 좀 낮은 수준입니다.

결손액은 1091억 또 미수납액은 9555억 원 수준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계획 현액은 8325억 원이고 사업비가 2550억, 여유자금은 417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임금채권기금의 사업비는 체당금지급액이 223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무료 법률구조지원 또 사업주용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480억 원 수준입니다.

34쪽,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431억 원으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265억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이고, 기타 융자금회수, 가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수납된 금액은 5323억 원으로 수납률 98%입니다.

결손액은 8억, 미수납액은 100억 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724억 원으로 사업비는 3030억 원이 지출되었고, 여유자금은 229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장애인가금의 사업비는 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에 1393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표준사업장지원, 능력개발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42억 원 수준입니다.

36쪽, 기금 마지막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

다.

징수결정액은 4439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1846억 원 이외에 복권기금의 전입금 등을 포함해서 정부내부수입 318억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된 금액은 3807억 원으로 수납률이 85.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납돼서 결손 처리한 금액은 58억 원, 미수납액은 573억 원 수준입니다.

39쪽, 근로복지기금의 지출계획 현액은 3931억 원이고 사업비는 2048억 원을 지출하였고요, 여유자금운용은 1759억 원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의 사업비는 주로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복지지원 또 근로자생계비대부, 신용보증대위변제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0억 원 수준입니다.

40쪽의 참고1은 각 회계와 기금별로 신규사업과 종료사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4쪽의 재무결산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 그리고 5개 기금을 통합해서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3년 말 고용노동부의 총 자산은 23조 428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투자자산이 각각 1조 1975억, 1조 3858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말 총 부채는 12조 8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10조 5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정도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하 45쪽부터 48쪽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재무제표의 세부 내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고용노동부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건 2013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

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부문입니다.

먼저 국가재정법에는 기금 관리 주체가 기금을 용을 변경한 경우에 분기별로 변경 내역을 상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변경하고도 내역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점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관리를 규정한 훈령과 예규를 점검한 결과 근로자 정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육아휴직 및 징계 관련 규정이 미흡한 기관이 적지 않았는데 관리규정 점검을 통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락에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직급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각각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사항입니다.

먼저 고용정책사업 중에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은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직종이 사무·서비스직에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정 직종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훈련생에게 자부담을 전액 면제함으로 인해서 일부 직종에 훈련 수요가 편중되고 취업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훈련생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훈련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은 인턴 기간 수료 전에 중도 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취업 알선뿐 아니라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 및 구인 의사를 조율한 이후에 인턴직을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단락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의 목적은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나 신규 가입률이 미흡하므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규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실업자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참여자 추계를 잘못하여 불필요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하였는바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노사정책 사업 중 선진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은 교육생 비중을 노사 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 일부를 자체 부담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중에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은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의 인력을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으므로 조속히 인력을 충원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법률을 위반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전용명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지원은 타 사업과의 중복 등의 문제로 집행이 저조하므로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 상향 조정, 지원대상과 기간 확대 등 집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비정규직 이동경로 조사에서 수탁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위탁사업비 집행 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고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임의 전용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 양성사업에서 수행기관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홍보비에 예산을 사용하였는바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사업은 30인 이하 훈련기관에 대해 평가를 면제하고 있으나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하여 약식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하위 등급 평가기관이 규정과 달리 차년도에도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을 철

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평등 실현사업 중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의 고갈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 중간 부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산재보험사업 중에 산재보험 급여관리는 산재보험급여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 조사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성과지표를 현실화하고 또한 신고 의존적인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산재의료기관평가는 불법 의료기관 등 산재의료기관의 부정운영 사례를 적절히 감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료의 질 외에도 직무적합성·위법성 등 규범적인 기준으로 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업종별 재해예방사업은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한 결과 그 인정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기금입니다.

임금채권 보장사업 중에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 목적과 협약에 맞게 출연금을 지출하는지 적절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된 소송비용의 일부를 반환토록 규정한 불합리한 협약사항을 개정하여 소송비용회수금을 전액 환수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체당금 조력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14.9%로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이 낮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며 경증 및 남성 장애인의 고용 쏠림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에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중 문화예술제는 사업 목적과 달리 효과성이 적은 가요제 해외 예심을 추진하거나 수상자와 근로복지공단·주관기관·후원기관 직원 등의 해외여행에 예산을 지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모성보호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관, 모성보호사업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중에서 극히 일부를 재정 지원을 하는데요. 고용보험기금은 원래 실업 예방 또 고용 촉진 이런 쪽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기금 목적을 보면 모성보호사업은 건강보험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건강보험에서 하도록 시도를 했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일단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잠시 맡는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모성보호사업을 정부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재정에서 250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모성보호·육아지원 집행한 금액은 보니까 대단히 미미한 것 같아요. 얼마인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모성보호……

○이석현 위원 예, 2013년에 모성보호·육아지원 집행액에 정부 재정에서 250억 원을 지원했는

데 막상 집행한 건 참 저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6569 억밖에 안 돼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3.8%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 문제는 저희도 예산당국하고 계속 협의를 매년 하면서 일반회계 출연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석현 위원** 뒤의 실무자가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저희로서는 작년에도 고용보험 중에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지출이 나가고 있는데 실업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리고 노사 단체로부터도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적절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높이려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석현 위원** 그래서 2013년에 정부가 재정에서 250억 원 지원했는데 쓰지는 않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쓰지를 않고 6000억밖에 안 썼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잘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 250억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그것보다 몇 배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의 경우 6000억 정도가 모성보호에서 나갔기 때문에 250억 갖고는 턱도 없는……

○**이석현 위원** 다 쓰고……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모자라는 거지요.

○**이석현 위원** 그런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이석현 위원** 여기 지금 통계 낸 것은 집행액이 6500억이라고 돼 있어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본 건데 더 쓰고 있군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합쳐서 쓴 거지요.

○**이석현 위원** 예, 합쳐서.

그러면 ILO 협약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얼마 안 됐지만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1952년에 ILO에서는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이석현 위원** 왜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제가 지금 그것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석현 위원**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나름대로 법률도 만들고 모성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약 비준해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성보호 협약을 비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일부 조항이 현행 법령하고 우리 실정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약 2조가 모든 비정형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해서 여성에게 모성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는 근로기준법과 고령법에 의거해서 가사사용인이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기업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들 때문에 지금 가입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전후휴가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법령 제검토를 꾸준히 해서 가급적 중장기적으로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ILO 가입국이 몇 나라나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현재 28개국이라고 합니다.

아, 비준 국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석현 위원** 아니요, 가입한 나라.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 가입한 나라는……

○**이석현 위원** 100나라가 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국제적인 그런, 12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ILO의 이런 기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성보호에 소홀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ILO 회원국은 185개국인데 그중에서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28개국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일부 미비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약간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작은 차이점들을 극복해서 가급적 조기에 비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이 계획보다 더 초과 달성되었네요? 112%라고 돼 있네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기금 수입이 늘은 게 반가운 일이 아니지요, 이 기금의 재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이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기업들이 안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데를 보니까 오히려 1000인 미만 기업들은 대부분 의무고용률을 이행했는데 그 이상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2%가 안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지요? 특히 30대 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싶은데 경기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상생을 해야 될 텐데 대기업들이 솔선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돈만 좀 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더라도 그렇고 좀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고용노동부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 고용에 크게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타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최대한 빨리 발굴하고 또 사회적 책임도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대기업을 촉진할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장애인의 직무능력을 향상하면 사람을 좀 더 쓰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맞춤형훈련 사업을 보니까 실적이 없어요. 전국 34개 캠퍼스를 가진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의 1년 넘는 기간에 단 1회 훈련에 교육 인원이 14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 구체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실적이 나쁜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석현 위원** 이게 탁상행정 같아서 제대로 했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저희가 좀 더 적합한 훈련체계를 구축해서 훈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영 위원** 새누리당 양창영 위원입니다.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차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작년도 2013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먼저 해외 취업성공장려금 실적이 예산액 36억 원 중에 1억 4100만 원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거의 96.4%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비록 기재부와 협의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는 애초부터 사업이 부실하게 계획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높은 불용률을 갖고 있다는 건 저희가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관련 부

처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 얼마큼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것인가라는 걸 충분히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가 좀 기술적으로 미흡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도 좀 확대하고요, 또 '취업이 된 거냐?'라고 하는 보는 인정기준도 좀 더 강화해서 올해는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집행률이 이미 42%를 달성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전액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그리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해외취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서도 또한 집행률이 15.7%에 불과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데 이것도 무슨 이유나 그 대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말씀해 주신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K-Move 사업에 대해서 재외공관에 계시는 영사분들한테 한번 협조 요청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영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해외취업 지원에 있어서 실제 현지에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데 진짜 애로 사항은 뭐냐 하면 체제비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자부담에 해당하는 그 체제비 부담이 이 제도를 크게 성공적으로 활성화 못 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지원 금액은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성과를 보다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로 체제비도 지원하면 어떨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양창영 위원 그리고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직사유는 비자 문제하고 또 낮은 급여 같은 이유라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비자 발급이나 또는 일자리에 대한 외적 요건과 또 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같은 문제점 개선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비자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교부와 협의를 하고 또 그게 각 국별로 쌍무적인 성격의 외교협약이 체결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풀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K-Move는 종전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지금은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이 결산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의 성과는 낮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내실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나 또 여기에 따르는 사업 관련 통계 이런 세부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글로벌 파견사업에 대한 차관님의 의지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가 좀 묻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작년에 K-Move 사업을 새롭게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취업지원센터라든지 또 K-Move 스쿨이라든지 새로운 접근법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성과를 조금씩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해외에 청년을 취업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과에 급급해서 단기적으로 양에 치중하기보다는 질적으로 하나하나 해외의 통합된 정보망을 구축해 주고 또 해외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데 도우미가 될 수 있는 도움 선배들을 계속 구축해 주고 또 국내에서 미리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충분히 직무훈련을 할 수 있는 스쿨을 많이 만들어 주고 또 현지에도 그런 KOTRA와 관계된 교민들의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차분하게 뚜벅뚜벅 진전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가 한 750여만 명 됩니다. 그분들이 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기업인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연계해서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보일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너무 인력공단에서 우물 안 개구리식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인력 진출에는 해외에 미리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과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좋은 지적이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모성보호 급여 부분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84조에 의해서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라고 하여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적립배율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놔고요. 하지만 2009년 이후에 그 1.5배는 깨어지고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뭐. 2014년에 아주 약소하게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 법에 정해진 비율을 정하려면 노동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거기의 주된 이유로 모성보호 급여를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모성보호 급여가 신설될 당시에는 성격상은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도 감안을 하고 현재 적립배율 수준도 그때 당시에는 좋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후 2002년에서 2014년까지 모성보호 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이 심지어 31%, 시작 당시의 257억에서 현재는 거의 7000억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까 차관님께서 공감을 하셨는데 그래서 향후 대책 부분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형편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저희는 차제에 근본적으로 아예…… 고용보험에 지금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노사가 같이 내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노사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율을 두 번이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성 급여가 너무 급속히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별도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회계에, 거기에 적립비율을 명확하게 법령으로 명시한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내년이 2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는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변화된 내용들이 완전히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환노위도 같이 노력을 할 텐데요.

또 이 관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지금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정에 의원님이나 홍영표 의원님이 발의한 안이 있는데 국회도 같이 이러한 문제 해결하는 데 법 개정 등을 통해서 노력을 좀 할 거고요.

이러한 고용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 모성보호 급여라든가 나머지 항목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오히려 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현재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심지어는 장기실업자 또 폐업한 아주 영세자영업자, 자발적 이직자 등등까지도 향후에는, 고용보험 취지에는 이런 고용보험의 수급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험을 실제 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OECD 국가들의 실업구조 제도를 봤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고보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향후에 고보기금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도 차관님께서 갖고 계신지하고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지금 말씀하신 예시하신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저희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고용보험의 대상이, 점차 수혜 대상이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같은 어떤 정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계속 약간의 시행착오를 해 가면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어떤 대상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떤 사업으로 담아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연구를 올해 계속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하나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률이 나아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고통받는, 그러니까 아예 노동자도 못 돼 보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모성보호 급여같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고요, 맞지 않는 이런 기금들이 있어서 일단 차관님께서도 문제의식은 너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주문드렸지만 바로 내년 예산부터 일부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이 예산에 조금이나마 반영되도록 실제적인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이번에도 간단히 얘기해서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테니까 어떻게 원인 진단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이것도 큰 틀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별로 호감이 가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간제 일자리라고 하는 고정적인 어떤 요소를 만들어서 어떤 영역을 개척하면서 일반 시간제 일자리까지 끌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 시간제 일자리의 스펙이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130%라든지 무기계약직이 전제가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승인하고 실제 고용 창출하고 돈이 나가는 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금년 3/4분기부터 작년에 승인받았던 사업들이 지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하나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장하나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좋아질 거라고 또 확신한다니까 지금 전망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또 차관님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시각에.

첫째 그렇습니다. 아까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는 사업주들한테 요구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롭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할 때는 뭐랄까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한 이런 일자리들, 사용자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무관리라든가 이렇게 편하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이런 일자리를 선호해서 시간제 일자리가 안 좋은 일자리가 되기 너무 쉬운데요, 조건이. 그런데 또 우리 정부에서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미 태생적으로도 불용될 확률이 높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초에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또 일부 기업에 이런 촉진을 했을 때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들을 많이 홍보할 때는 선진국식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 육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계발을 노동자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전환형으로 하는 것들은 홍보했지만 실제 지금 신규 채용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약간은 속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마음도 좀 들어서 첫째로 시간제 일자리를 아예 발목잡고 하지 말라고는 저도 안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을 좀 반영을 해서 다음 예산에는 잘 될 것이라고 보셨는데 저는 일부 조정된 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것이 소위에서도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그것보다는 이런 줄여진 예산들을 당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이었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두루누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액을 더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두 가지 같이 소위 때도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았으면 하고 차관님도 이런 지적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 맞대 주십시오

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위원장 김영주 답변은 안 들으시고 그냥 얘기만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유념해서 소위 때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지금 답변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 일자리를 과연 얼마큼 시간선택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도 지금 저희가 설계는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그런 쪽을 택하는 노사 모두의 움직임이 지금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정치하게 상황을 예측하고 설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희도 명확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차관님, 제가 왜 답변을 듣고 싶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노동부 산하기관 들을 때도 시간제 고용에 대한 심각성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 차관님께서 시간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정부정책에 시간제 근로자가 대다수가 여성에 해당되고 저임금에 해당되고 이렇게 심각한데 아직 이런 방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참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뭘뭘라고 합니다’ 다른 기관 얘기하시듯이, ‘뭘뭘 할 예정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하시라고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결산 검토에 앞서 먼저 대형 산업단지 중 화학 단지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화학단지의 경우 수많은 인화물질과 폭발물질로 인해 한 번 터지면 대규모의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피해도 엄청나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다시 말해서 화약고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 단지들은 1960년대부터 조성된 단지들로 노후화되어 그 위험성은 더 큽니다. 올해 사고만 해도 14건이나 났습니다. 화학단지의 인명피해는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기억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朱永順 委員 당시에 그때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고 1만 2000명이 대피했고 212ha의 농경지, 4000여 마리의 가축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화학사고가 위험한 것이 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화학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들만 해도 전부 제각각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매뉴얼의 내용도 사고 예방활동이나 교육보다는 사고가 터진 이후의 사고 수습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여수화학단지 두 단지에서 발생한 산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정확히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말로는 예를 들어 여수화학단지가 터지면 지리산 이하 남쪽이 전부 불바다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화학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맡겨져 있어서 화학공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점검 관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작년 2013년에 공정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웠습니까?

그것에 대해 잘 모르시지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업들에게 노후화된

그 시설을 맡겨만 둘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개보수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는 장기 저리자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서라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를 않고 점점 수준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큰 대형사고가 터질 것 같은데 차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朱永順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질의에 그냥 적당히 답변하는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임기응변적으로 사고만 방지해서 적당히 가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드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점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실상을 파악하고 잘못된 노후시설은 지시를 하고 또 그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될 때는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朱永順 委員** 대답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점검하는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 외에 화학단지 내 고용 노동은 물론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업주의 안전의식 진단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매뉴얼도 재정비해야 됩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른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도 또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10~20년 전, 몇 년 전에 작성해 놓은 것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대로 체크하고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차관께서는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 등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우선 매뉴얼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그것에 기초하여 반복적으로 교육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와 병행해서 최근에 화학사고들이 주로 협력업체가 보수정비 작업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의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와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도 접근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사고 징후를 미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朱永順 委員**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작년부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제도를 마련을 해서 금년 5월에서부터는 시범운영 중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3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정도부터는 화학물질 취급 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미리 걱정하는 것은 그때 만약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전면적인 시설을 바꾸어야 하거나 새로 증축해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코스트(cost), 돈 부분을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저희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朱永順 委員** 예, 예산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산재예방 사업의 불용액 역시 약 10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으로 소중한 예산을 남길 바에야 차라리 노후화되고 대형화된 화학단지의 산재 예방을 위해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아무튼 그것은 이 사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공단의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朱永順 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수와 울산의 화학단지는 화약고하고 같은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점검 수준이 아니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따른다 이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 산재 예방에 각별히 차관, 장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입니다.

우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연계된 사업을 대기업들이 자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이용을 함으로 해서 대기업의 위장도급 회피, 인력관리 및 노무비용 절감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문제를 지적을 할 때 훈련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산하 중소기업 훈련 지원 중에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이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절차나 이런 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 SK 비정규직 지회를 통해서 SK가 자기 옷을 입혀서 일을 시키지만 자신의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사원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활용했는데 6개 과정에 SK만 886명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것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연계된 동 사업의 최초 시작 시점부터 삼성전자서비스, KT, SK, LG 이 4대 대기업이 자신이 직접 교육시키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한 협력업체에 대한 그런 참여현황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거기 내용에는 위탁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한 신청서, 심사평가서 전체, 최종 실적 보고서 등등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하여는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이런 중소기업 직무능력 향상 사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취지대로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현재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보자는 취지이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체의 자료를 저희한테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운용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예산정책처에서 이것을 매년 지적을 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고용보험기금과 산재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 지난 6월 18일 고용보험위

원회 결정을 통해서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을 민간 주간운용사, 민간 투자사에게 사회보험기금 운용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다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적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다른 기금들도 제가 봤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이런 것들을 보면 우선 이들은 직접 자산운용을 해요. 자기 자산운용 인력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가지고 직접 운용을 하고 수익성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용노동부 자산운용팀 5명 이내를 가지고 수익성도 낮고 대신 비용 부담이 훨씬 더, 운용 관련 비용 부담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이 된 것이 다른 기금처럼 직접적으로 고용부가 자산운용을 해서 사실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수익성도 그다지 높지 않고 혹은 2013년과 비교해 보면 더 떨어졌지요, 아예.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다른 기금하고 비교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왜 계속 이러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일단 결과적인 성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의 객관적인 운용 수익률이나 이런 것은 타 기금에 비해서 평균 이상 정도는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같은 비용 구조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자체 운용 인력이 자산운용팀 딱 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기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립학교교직원기금은 자체 운용조직이 36명이라서 직접 운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가 조금 더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런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몇 년 전부터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도 그 지적에 따라서 자산운용팀을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저희가 직접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였으나 아시다시피 조직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새롭게 국을 만든다거나 그걸 하기가 쉽지 않

을 것이라는 전망이 되어서 그럴 바에는 차제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산 운용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고용보험심사위원회하고 산재보험위원회에서 일단 잠정 의결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코스트(cost)나 비용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위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지금은 하나하나.....

○은수미 위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민간 투자사한테 맡긴 게? 왜냐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11조 3000억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고용보험기금하고 산재보험기금이 제가 보니까 한 14조 정도 되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렇습니다.

○은수미 위원 액수도 더 많아요.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금공단을 아예 만들어서 6팀 36명으로 하고 있어요. 운용 수익률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약 4%,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하고 산재보험기금은 약 3% 좀 넘는, 한 삼점일이% 정도로 수익률도 낮아요. 그다음에 위탁운용 수수료도 훨씬 더 높고 그러니 수익은 낮고 수수료는 높고 기금은 더 많고 국민한테 끼치는 영향도 더 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공공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계속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결국 그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개의 민간 투자사 대신에 한두 개로 집중을 하면 이게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는지, 계속 그러시려고 하는지.....

만약 공단이나 이런 직접적인 관리 형태로 하시기가 어려워서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국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기금의 안전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매번 민간 투자사에 이렇게 맡기는 것을 지적받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그러면 1, 2개 민간 주간운용사를 운영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나아집니까?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운용하는 것보다 지금 평가는 수익률이 낮은 것도 확실한데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위원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한 1년여 간에 TF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토의를 했고요, 또 노사단체와 같이 TF에서 논의했고 해서 굉장히 오랜 논의의 숙성기간을 거쳐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그 민간기관이 저희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관을 상대하는 중에 저희 상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심과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담 자산운용기관을 도입해서 적정성과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루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고 그렇게 결정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1분만.....

그러면 자료를 설명을 주신다니 어쨌든 내년도 기금운용 주간사 선정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그 자료는 저희 의원실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저는 이 방식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장하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노위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든가.....

왜냐하면 이제 고용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다른 시간제에 영향을 준다..... 아예 부정적 영향을 줬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고용률은 소폭 늘어나고 불평등은 대폭 늘어나는 방식의 아주 나쁜 고용 모델을 조장하는 것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선택제의 목적이나 그것이 다른 일자리에 끼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결산 및 향후 예산에서 저는
대폭 삭감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료 법률구조지원단 체불임금 처리하기
위해서 노동부와 협약을 하고 업무를 집행해 나
가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은
채권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소송비용, 변호사비
를 지출하고 소송을 통한 회수금 중 일부를 기금
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2013년 198억 67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
다. 그 협약 내용의 지원예산안 산출 근거를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송비용은 건수에다가 사건 증가율, 평균 비
용, 변호사 보수비용도 저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채불근로자에 대한 협약서 1조에
따르면 임금채불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하
는 것인데 사업 목적에 맞게 돈이 지출이 안 되
어 있습니다. 공단에다가 제시 요구를 했더니 못
내준답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왜 못 드리고 있는지.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자금 자체가
다른 자금과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5조
에는 운용 및 사용에 대한 장부 작성을 의무화하
고 있는데 장부 작성이 제대로 전혀 안 되어 있
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확인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다음에 협약서 6조에 보면 4월
말까지 사업 실적뿐 아니라 출연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출연금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개략적인 내용이 아니라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경비, 물품 구
입비, 여비, 매식비, 전화료, 기타 관련 소상히 제
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변
호사 월급은 정액으로 정해 놓고 보수 내역이 일
하는 데 맞춰서, 아까 산식에 의해서 지급이 되
어야 되는데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채권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다른 변호사에게 상
담소의 수입으로 환산이 되어 가지고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국가재정이 목적 외 예산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구
조지원단은 200억 되는 그 출연 예산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들 수입으로 인정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2006년도부터 출연금 집행 실
적입니다. 2006년도 32억이 2014년도 202억 9900
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볼 때 이 산식을 협약할 때에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기금이 로스(loss)
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협약서에 사업주가 패소
했을 때 승소한 금액을 환수를 하는데 그 환수한
금액을 전원 회수하지 아니하고 반반 가르도록
해 봤습니다.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수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협약서 내용도 보면 방금 내가 다섯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관행적으로 죽 같이 해 왔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가지고 근본적으로 보완하거나
재협약해야 된다는 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관 수탁하는 업무 여기서 돈 나가는 것은
있는데 안의 내용 자체가 면밀히 분석되지 못하고
있고 또 감사가 늘 있는 줄 압니다만 그 돈을
출연해서 가는 기관에서는 나가 가지고 그 용도
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
한 사항들을 볼 때 저는 국가 예산이나 기금을
소홀하게 지급하는 경향이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문제를 업무 감사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가지
고 출연하는 돈이 목적대로 쓰여지느냐 안 쓰여
지느냐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고용보험기금 이것 노사가 내는 돈인데 쌈짓돈이 아닙니다.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하는 것, 고용보험과 외국인력센터 지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담하고 한국어, 생활법률, 한국 문화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지적하신 목적 외 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시설 설치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능력개발훈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저희도 봐집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예시하신 외국인력지원센터는 고용보험법 26조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최봉홍 위원 됐습니다. 설명이,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것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지금 노경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이것을 쌈짓돈이라고, 노동부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불만에 짝차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목적대로 모든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먼저 질의 순서를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권성동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얼마지요, 우리?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0억 정도 됩니다.

○권성동 위원 990억?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 인건비만 그렇고 전체로 하면 1650억입니다.

○권성동 위원 1650억이요.

예산이면 인건비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비용, 판로 등을 지원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세계 등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나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년간 인건비 지원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2년이구요, 인증받고 나서 3년입니다.

○권성동 위원 총 5년이네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5년 이후에, 이게 지금 시행된지가 얼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2011년부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2007년이구요.

○권성동 위원 2007년이요, 이런 제도가 생긴 건 언제인가요? 이렇게 3년, 2년……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초에 인증받기 시작한 건 11년부터입니다.

○권성동 위원 11년?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권성동 위원 거기에서 3년 지나면, 11년이면 2014년이니까 아직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건 없나요? 바로 처음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도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아니,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거 누가 좀, 차관이 잘 모르면 담당자 나와 보세요. 담당 국장님 발언대 좀 서 보세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입니다.

○권성동 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지요, 시도에서?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자치단체형……

○권성동 위원 거기에서 3년간 거친 다음에……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2년입니다.

○권성동 위원 2년을 거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나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권성동 위원 사회적기업 지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인증했습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1124개입니다, 6월 말 현재.

○권성동 위원 6월 말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예비를 안 거치고 바로 사회적기업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비를 받드시……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2011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확대를 위해서, 그 이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애초에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신청해서 인가된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권성동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3년간 각종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지원이 종료된 기업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종료된 기업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권성동 위원 지원이 종료된 기업 중에 아직까지 살아 있는 기업은 몇 개 됩니까, 몇 % 됩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제 기억으로 한 90%……

○권성동 위원 그 통계를 안 뽑습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뽑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권성동 위원 그런데 뒤에서는 75%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90%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전체는 90%이고 종료 이후는 75%입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일자리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 존속하고 있는 그걸 기준으로 뽑으면 75%이고……

○권성동 위원 지원 종료 이후에 75%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예.

○권성동 위원 그러면 보통 1개 사회적기업당

고용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규모별로 편차가 있는데 평균 한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사회적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도대체 차관님도 제대로 모르고 담당 국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아니, 확실히 아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편하지요, 진흥원장님이 그 업무만 담당하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사회적기업진흥원 김재구입니다.

○권성동 위원 답변 대상자를 잘못 선정한 게 잘못입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지금 고용 인원은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경우에는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권성동 위원 평균 20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예.

○권성동 위원 다 정규직인가요? 거기에다 비정규직이 또 있지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물론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관계도 있고 또 사회적 재정 일자리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까지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해서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지금 장려하는 건데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로부터 인건비, 컨설팅비 이런 거 지원받아가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비정규직만 죽 썰 가지고 명맥만 유지하면서 한 5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단물 빼 먹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규직을 채용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만 사회적기업으로 해야지, 지금 사회적기업 진흥법이 통과됐고 또 정부의 정

책 목표로 사회적기업 수를 늘린다는 그런 목적 하에, 미명하에 기업만 자꾸 늘리면 뭐하나고요. 물론 비정규 일자리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 도입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증할 때 인증 절차도 좀 까다롭게 하고 너무 목표에 매몰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비롯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래서 기업 목표 수를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재구**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시간제 근로가 있는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정부가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구조상 연 단위로 이루어진다든가 또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 정규직 형태의 고용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향후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저도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서 국정감사 때 다시 그 부분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한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예정처에서 지적했는데 근로자문화예술제 입상자 해외문화 체험 참가대상 선정 부적절 그거 보셨지요, 예산정책처에서 낸 거?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권성동 위원** 근로자 근로 의욕·사기 양양을 위해서 근로자문화예술제 개최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상금도 수여하고 금상 이상 수상자에 대해서 해외문화 체험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수상자 말고 한 평균 23% 정도 기타 인원이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진흥기금으

로 보내면서 주관기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복지공단입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인데 주관기관하고 협찬기업도 있지요? 잘 모르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협찬기업의 직원……

○**권성동 위원** 이것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쭙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갑입니다.

○**권성동 위원** 여기 협찬기업이 주로 대기업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기업은행에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기업은행에서? 그 직원들 가는 건 좋습니다.

좀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로 편중되어 있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부분은 잘 안 끼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이외에 다른 참가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인솔자 이외에는 기금 사용을 해서 참가하는 것은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위 입상자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행사의 성격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중소기업 또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보완해 가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기 연봉으로, 보수로 해외여행 갈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워낙 보수가 적다 보니까 진짜 자기 돈 들여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받기 전에 좀 더 어려운 근로자들,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고려한 그러한 방안을 먼저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걸 참 부끄러운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차관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있지요? 일명 두루누리사업 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민현주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까지의 평가를.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작년까지도 굉장히 집행 실적이 낮아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제도개선을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는 데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료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안 그랬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빼고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다 보니까 가입 시에 본인 추가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꺼리는 점이 있고 또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끊임 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사업장의 행정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EITC 정보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미가입 사업장을 파악을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아울러 지원 대상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이동 실태를 보고 아울러 제도개선을 해서 매력 있는 또는 유인효과가 있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바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제한점, 한계점들은 이미 두루누리사업 처음에 초안이 설계돼서 시행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점들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전격 도입됐고요.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루누리사업이 제대로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두루누리사업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된다면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등등의 사업들과 맞물렸을 때 굉장히 사각지대가 다시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루누리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봤더니 신규 가입자 수가 일단 적어져요. 그래서 목표로 세우고 있는, 설정하고 있는 신규 가입자 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줄이면서 기 가입자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지 않나 싶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10인 미만 기업의 신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차관님 좀 말씀해 주세요. 신규 가입자 수 추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 가입자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분류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계속 기 가입자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를 구분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소급 가입자로 한정을 해서 사업을 평가하게 되면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지연 신고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신규 가입자, 기 가입자 그 기준도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럴 생각입니다.

○**민현주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언제부터 바꿀니까,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지금 연구 중입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때 저희 볼 수 있습니까, 그 방안을?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입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감사 중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완전한 형태의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연구 진행 중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신규 가입자, 기 가입자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라서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지를 먼저 좀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지금 관련 연구가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양한 두루누리사업의 개선 방향을 담아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또 기준에 대한 것은 윤곽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저는 이걸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내용을 미리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알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일단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고요.

일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 근로 비율 높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 차례 지적도 됐었고요. 시간제 근로자도 워낙 많은 비율인데 그 중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도 이미 고용노동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은 혜택을 못 받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현행법상은 안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서 부모보험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과제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보험요. 북유럽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기도 한 보험인데요.

그러니까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부모보험 형태로 해서 의료보험과 지금 현재 고용보험을 다 묶어 주는 거지요, 특히 실업보험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해서 어떤 보장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말은 안 하고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1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솔직히 차관 개인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모보험은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뚜렷하게 자신 있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뭐나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가 없게끔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민현주 위원** 그 두루누리사업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미진하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작년보다 훨씬 많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말 현재 거의 50%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모보험이라든지 이런, 만약에 사각지대가 해소 안 되는 상태에서라면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모보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깐요, 국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차관님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재정부에서 알리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295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총 38만여 명의 고용형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6%, 약 6만 명이 간접고용이고 직접고용 인원 중에서 약 10.9%, 약 4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양호한 수치로 파악됐는데 간접고용이 14.1%,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7.0%입니다.

또 하나의 화면을 보시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 평균과 전체 공공기관 평균을 넘어서는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의 3배가 넘고, 잡월드는 무려 86.9%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

황을 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발전재단이 고용노동부 평균보다 높고 이 중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노사발전재단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소속 외 근로자, 즉 간접고용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보는 것처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잡월드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과 고용노동부 평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입니다. 청년인턴은 사실상 계약직이지만 포함시키지 않았고, 무기계약직도 차별받는 정규직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제외했습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만을 합친 수치입니다. 그래프로 보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폴리텍, 노사발전재단, 잡월드가 고용노동부 평균과 전체 공공기관 평균을 모두 초과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해당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예산과 정원(TO)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9일 날 고용노동부 소관기관 업무보고시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도 이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그 소속기관 고용상태가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율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일단 비정규직 규모가 큰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견이나 용역과 같은, 예를 들면 시설관리라든지 몇 개의 어떤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일정부분 간접고용이 필요한 영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노사발전재단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위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꾸준히 정규직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만 잡월드에 있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다시 생각해 주실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잡월드는 지금 위탁을 통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고정된 인원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나머지 기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태를 더 파악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라면 당연히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해당기관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신 분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업무의 성격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이면 당연히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이인영 위원 그리고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혹은 비정규직 상태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피한 영역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그것도 물론 최소화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구분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방금 말씀드린 게 조금 업무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인영 위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1년 9월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라는 거를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2015년까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방침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2015년이 언제입니까? 몇 달 남았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내년입니다.

○이인영 위원 어떤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계약직 내지는 비정규직이, 혹은 간접고용·파견직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2015년 가면 해결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막연하게 ‘정원과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내년까지, 또 어떤 부분들은 그다음 연차에 이런 우선순위라도 만들고 연차적인 계획표라

도 만들어서 실제로 정부 소속기관 내지는 산하 기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에서부터는 만들어져야지 그다음에 여타 부처에, 공공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자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옳은 지적이시고요. 작년에도 산하단체들이 직제개정을 통해서 조직의 정규화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저희 산하기관별로 하나하나씩 업무분석을 해 보고 그중에서 단계적 전환계획 같은 것도 한번 수립을 해서, 얼마큼 저희가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추진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1년에 이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2012년, 2013년, 올해 2014년 연차적으로 어떻게 단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 가고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이런 뭐라 그럴까요, 성과들, 결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자료까지 마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국정감사 때 할 거니까 미리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신문기사 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한테 박영선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걸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지금의 근로빈곤 문제라든가 아니면 불안정한 어떤 고용상대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기재부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대체로 처음에 제가 이기권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시다만 기재부의 눈치를 보고 예산을 이렇게 한탄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정원 문제가 규정되니까 정말 천수답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재부의 막냇동생은 아니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차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당연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도 사실 지금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마침 관계부처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노사하고도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앞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은수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 국감 전에 저희 위원장실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고용노동부 주관 11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핵심과제로 손꼽히며 정책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큰 틀에서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동의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런데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집행실적을 보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2011년에는 계획액이 39억 정도 되는데 고작 18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고요, 2012년에는 78억 중에 61억만 했었고 그리고 2013년은 21억에서 그중에 5억 정도만이 자체 변경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지금 말씀하셨듯이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이 저조한 반면에 작년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많이 증가해서 세부 사업 내에서 내역을 변경했습니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60%로 인상을 하고요, 또 그 기간도 종전에는 1년만 쓸 수 있었던 것을 만약에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데도 안 갔다면 육아휴직 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일단 육아휴직이 경력 단절의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이자스민 위원** 지난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를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힘써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제도들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차관님, 먼저 2013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 1624억 중에 27.8%에 해당하는 450억의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작년엔 450억 원 이월되게 된 배경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방식을 분기별로 선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월별로 후 지급 방식으로 바꾸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작년엔 이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금년에 해야 되는 수요가 대폭 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일단 여러 사정들이 있겠지만 과다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

해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 말씀하시는지 잘……

○**이자스민 위원** ‘중소기업 안티를 양산하는 청년인턴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안티만 양산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인턴을 수료해야 하니까 중도탈락 비중은 늘 20% 이상을 웃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새겨들을 접이 있다고 봅니다.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일단 저 기사 그것 말씀하신 것 봤습니다. 저도 그것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위탁 운영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충분하게 지금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자성을 하면서 차제에 좀 더 촘촘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지원 수준이라든지 또 지원 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사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취업 중도탈락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서 너무 대기업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대개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안티만 양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취업 알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취업의사와 구인의사를 조율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하고 현장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훈련 실적을 보니까 사업비를 투입한 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 건지는 의문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2009년 예산과 비교해 볼 때는 2103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훈련 참여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우선 예산 총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기재부와의 업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에 나눠져, 흩어져 있는 인력 양성사업을 통합하라는 권유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 그 바람에 저희가 102개소를 관장하던 게 168개를 관장하면서 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운영예산이 전부 저희한테 들어와서 일단 예산은 올라갔고요.

○이자스민 위원 하기는 하는데 교육을 받는 인원이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저희가 작년부터 훈련 내실화라는 미명하에 운영기관 하나가 중소기업 여러 개를 맡고 있었다면 저희가 앞으로는 1 대 1로 매칭형 방식으로 해서 훈련의 질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바꾸었더니 실적이 조금 감소했던 측면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한 번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운영기관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훈련 인원의 큰 증가가 없다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지금 혹시 생각을 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훈련 인프라를 컨소시엄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성 위원 반갑습니다. 문대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전문위원 보고를 받았는데요. 모든 사업의 내용이 보면 모든 평가가 굉장히 다 부정적입니다. 그렇지요? 긍정적인 평가가 없고 시정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개선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예산이다,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013년에만 이런 것인가 생각해서 2012년도 전문위원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하고 2012년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긍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 보고를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9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 점은 위원님의 시각에서 제가 보질 못해 가지고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2년째 결산을 맡고 있습니다만 보고서가 두 해 다 긍정적인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고용부가 갖고 있는 사업 폭지도 워낙 많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결과치, 예를 들면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로 결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치한 분석보고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다 보니까 미흡한 측면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문대성 위원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 하나 뚜렷이 나아지는 게 전혀 없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정규직 문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지만 무엇 하나…… 지금 보고서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예산이 무분별하게 조금씩 다 지출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업 정책을 실시할 때 사전에 어떤 예측을 하는 전수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자료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90%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래서 남는 불용액을 쓸데없는 데 예산을 낭비하라는 뜻은 아닌데 불용액이 나오면 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을 동결할 수 있으면 예산을 동결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또.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우선 큰 틀에서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 고용 창출 또는 고용 지원, 유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끊임없이 변경시켜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테크닉이 저희가 아무래도 부족하고 특히 시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수용해 주셔야 될……

○**문대성 위원** 차관님, 행정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에 관련되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과 근로자가 그런 제도를 얼마만큼 숙지하고 반응을 보이시는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불용 때문에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변명을 드린다면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국정 초기에 고용률 70%라는 큰 틀의 목표하에서 많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는 점은 약간은 헤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맨 처음에 정부의 목표치인 고용률 70%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목표치 아니었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70%라는 목표치를 정했는데 굉장히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불편해 하시고 또 입으려고 하는 정부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정말 집중해야 할 곳은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틀에서…… 오전 질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도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뤄낸 성과가 아직 다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불안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에 있어서 고용률 70% 목표는 적어도 지금 저희의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생각한 만큼의 진도는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대성 위원** 양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이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질적인 부분에서는 기업도 또 근로자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임계층의 문제라든지 소외계층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도 현 정부에서는 성장률과 물가 플러스 분배 구조 개선에 관한 알파를 더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연 두 해째 지금 7%로 가고 있고요.

○**문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제가 장관후보자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최저임금 5580원이 결정되었을 때 차관님 생각에는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한 수치가 있었는데 한 7%대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숫자가 세 가지가 녹아 있었던 거거든요, 성장률하고 물가하고 분배하고. 그래서 예상 범위 내에서 타결이 되었고 또 마지막에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던 게 노동계였습니다.

○**문대성 위원** 차관님, 그게 적정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지요. 아니, 116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문대성 위원**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해서 대학생들 등록금도 안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대학생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런데 위원님, 최저임금 기준 자체가 예를 들면 4인 가족이 가장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대성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

요.

어제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추진을 하시겠다 했는데 분명 올해보다, 7.1%보다 분명 상승된 부분을 제안할 겁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저하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경환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러면 10%, 15% 올려라, 내가 올린다고 했으니’, 인상하겠다고 그러면 약속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과?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성장률,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반영, 시장의 상황 이런 상황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반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문제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한 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 어떤 힘에 의한 그 몇몇 소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고용부에서 아무리 추진하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딱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풀겠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그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위원님……

○**문대성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어떤 객관적인 사실 부분이 약간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저임금, 물론 정책 당국자로서 저희나 또는 최경환 장관님께서나 누구나 어떤 목표를 가지실 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 뭐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위원회 구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문대성 위원** 차관님, 최경환 기재부장관께서 바보가 아닙니다. 왜 바보가 아니냐, 인상하겠다고 하고 하신 거는 지금 7.1%보다 더 상승시켜서 인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게 이해합니다.

○**문대성 위원** 당연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가……

○**문대성 위원** 아니, 만약에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안 좋은 상황이다, 내년에, 그런데 최경환 후보자께서 7.1% 이상을 올리겠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 반대할 명분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최저임금은……

○**문대성 위원** 아니 명분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저희가 반대를 하고 말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위원회 공익위원인데……

차관님, 공익위원 어떻게 해서 선출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 공익위원, 노동자위원, 전체 위원을……

공익위원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문대성 위원**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리고 공익위원은 노사의 추천을 다 받아서 저희가 걸러 갖고 가기 때문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대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결정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이유를, 정부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7인의 위원이 협의를 해서, 마지막에는 며칠씩 밤을 새 가면서 협의하셔 갖고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노동계가 일괄 퇴장하시거나 때로는 경영계가 일괄 퇴장하시거나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영계가 일괄 퇴장하셨습니다.

○**문대성 위원** 제가 그분들의 전체적인 부분은 못 봤지만 그분들의 재산 현황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돼 있으신 분인지 저는 그분들에 대한 재산 현황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나중에 위원님께 더

자세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등식을 합치면 저희가 추정키로는 2017년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중위수 정도는 다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 김영주 마무리……

○문대성 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니, 괜찮아요.

○문대성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에 요구 좀 하겠습니다.

현 최저임금을 100% 높이고 향후 5년간 동결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료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내년엔 100% 그다음에 5년 동결요?

○문대성 위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한번 추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세요.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향후 3년, 4년은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가정의 어떤 가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추정은 하겠는데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이 만약에 평균 매년 10%씩 올라야 된다면 차라리 그 방법이 나은 것이지 원 샷으로 100%를 올리고 5년씩 동결하는 것은 경제에 타격만 줄 뿐이지 누구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대성 위원 그런데 그걸 10% 정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저희가 정한다는 게 아니라……

○문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씩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은 좀 모순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지금 예시를

100% 하셨기 때문에 저도 예시를 드린 겁니다.

○문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차관님, 2017년에 평균임금의 중위 수준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요,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 평균임금이 아니라 소득의, 근로임금의, 통상임금의 중위수지요.

○한정애 위원 아니,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하향 다운해서 중간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지요. 오히려 저는 걱정하는 게……

○한정애 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알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관피아 관행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는 척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동부에도 이런 적폐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당연히 척결해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

마이크를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냥 저기 서서 말씀하시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입니다.

○한정애 위원 4월 달에 우리 국회에서 기술자격법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 예.

○한정애 위원 이게 2011년에 정부가 발의했던 건데, 그러니까 18대 국회에서 한 번 발의를 하셨었는데 18대 국회에서 그냥 폐기됐고요, 안 됐고요.

자, 19대 국회 들자마자 정부안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정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해서 기술자격 부여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특히 위탁 중에서는 재위탁하는 것을 주로

답았습니다.

지난 4월에 통과시키면서 지정교육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하는 것만 통과되고 권한의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맞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 예, 신설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지요. 안 들어갔습니다.

자, 노동부가 2011년에 18대 국회 때 이렇게 미리 권한의 위임·재위탁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인력공단이 하고 있었던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이상한 사단법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재위탁을 해버렸어요. 위탁을 하고 이게 위법하니까, 법에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제가 정말 질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3년째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 이번에는 해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재위탁을 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걸 일사부재의라서 더 이상 이제 다시 논의할 수가 없어요, 19대 국회에서는. 그런데 위법한 상태에서 3년 동안 재위탁을 한 겁니다, 기술자격검정원에. 이것 불법한 거죠?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 저희들은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거를 벗어나서 있을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 4월에 통과될 때 그 조항이 빠진 채로 통과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재위탁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행령은 법을 벗어나 있는 시행령 근거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때 논의를 할 때 재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다양한데 굳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 시행령에 이미 다 재위탁을 해 놓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한정애 위원** 시행령에 재위탁한 것은 국회 기존 법률에, 국가기술자격법 법률안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을 마음대로 그냥 노동부가 개정할 것이지요.

그러면 정부가 왜 개정안을 냈습니까? 그게 불법하다라고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그 법을 내서 18대 국회에…… 제가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걸 해소하자는 겁니다.

자, 차관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인력공단에서 쓸 때는, 2011년 기준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80억 정도를 썼습니다. 이 예산, 550과목 12개 종목에 대해서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억 정도……

위탁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인력공단에서 쓸 때는 80억 정도 돈이 들었는데, 이것을 2012년에 위탁하면서 들어간 돈이 인건비·운영비 한 40억 하고 검정시행비 해 가지고 127억 들어갔습니다. 2013년에 148억 들어갔습니다. 148억 9000, 거의 150억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지요.

여기 대단한 것은 이게 사단법인이고 법적기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준 인건비·기관운영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노동부가 특별하게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정시행비는 실비로 계산해서 주시긴 하는데, 인건비·기관운영비라고 준 것에서…… 임원이 달랑 3명 있는데 2012년에서 2013년 올라가면서 임금을 29%인가 올렸어요. 그래서 한 8400 정도 연봉을 받고 계시다가 1억 4000 정도로 연봉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새로운 일이 많으니까 비정규직으로 다 사람들을 35명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 월평균 급여가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노동부가 도대체 재위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괜찮은 일자리를, 위법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적폐를 노동부가 직접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좀 보이지 않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임원 3명 중에 2명은 노동부 사람이고 한 분은 인력공단 근무하시는 분이 내려갔잖아요.

이것 해소를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일단 말씀드릴까요?

○**한정애 위원** 아니요, 지금 뭐 어떻게 해소 방법을, 지금 신임 장관도 오시고 하니까……

일단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게 자격검정원, 이것 지난번에 법인 등록 과정이 거의 특혜 수준으로 컸거든.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인력공단에서 그냥 여기에다가 주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공정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에요, 공모 절차 자체가.

해당 기관이, 적절한 다른 기관이 나타나면 매년 재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다른 기관에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기관에 계속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법률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격검정원 법인 등록 과정과 재위탁 과정 그리고 검정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면 조사해서 가지고, 신입 장관께서 업무보고 하시게 되는데 그 전날까지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큰 겁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재위탁 중단하는 방법 그리고 자격검정원 향후 처리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조금 일이 많을 수 있으므로 국감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첫 번째 질의 순서대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차관님, 저는 글로벌취업지원사업 좀 여쭙 보겠습니다.

몇 해째 계속 K-Move(글로벌취업지원사업) 등 질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일자리의 질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또 고용 상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노동부 측에서 직종도 단순노무직 배제한다는 기준을 두셨고요. 업종 및 국가도 의료·IT 등 전문직 우대하겠다는, 비자의 경우도 12개월 미만 단기비자가 아니라 취업비자 중심으로 하겠다, 연봉도 연 15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두셨어요, 뭐 연봉 기준은 생각보다 높진 않지만. 그랬더니 그에 따른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매년 4000여 일자리를 해외에서 찾아갔다면 1600명으로 2013년에는 줄었습니다. 이게 일자리 질 제고와 연관이 된 변화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일단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거 외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도 수치만 봐서.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저희가 사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질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많은 사업 아이템은 새로 생겼지만 양은……

일단 그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들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성과는 지금 현재 좀 줄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장하나 위원 제가 2013년의 1607개 취업 현황을 받았는데요. 이분들 계속 고용되고 있는지 상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일단 취업은 됐는데 3개월 후에는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지 계속 그 나라에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거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건 챙겨서……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는 들은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나 위원 혹시 뒤에서라도……

2013년에 취업한 분들 현재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팔로잉이 됩니까, 이제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국장 박화진 인력수급국장 박화진입니다.

저희들 사후관리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못하고, 다만 이제 일정 기간 지난 분들 대상으로 해서 샘플을 해서 그렇게 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로는 해외에 취업한 분들 사후에 있어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다 보니까, 어쨌든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반 토막 이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일자리 질이 안 좋았다는 것 결과적으로 반증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취업하고 있는지 팔로잉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이 기회에

보시지요. 국감 때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일단 취업해 놓고 나 몰라라 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계속 글로벌 취업 사업이나 K-Move가 이대로 되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 없고 취업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취업 망명시키고 취업 난민 만드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라고 해서 좋은 일자리들이 없는데,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K-Move라는 사업을 등 떠밀어서 내보내 놓고 뒷감당 안 하는 이런 사업은 좀 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소화해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업은 KOTRA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하여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따지면 어쨌든 중복사업이라 가지고 노동부가 K-Move를 계속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잡 탐방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장하나 위원** 해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시범적으로 몇몇 청년 구직자들을 직접 대동하고 가서 현지에서 취업까지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범사업을 8개 국가인가요, 10개 국가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제 다 이행이 되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난 국감 때 일부 했었고,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총 10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는 몇 명 취업되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34명의 잡 탐방단 중에서 17명이 취업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습니다. 10개 국가에 17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업시켰고요. 그러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2억……

○**장하나 위원** 2억 정도?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2억 5000 정도입니다.

○**장하나 위원** 2억 5000요? 그래서 2억 5000을

들여서 36명의 젊은이들을—멘토링단인가요? 우리 노동부 직원들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데리고 가서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취업을 시켰네요, 17명. 그리고 여기에서 발굴한 일자리가 있어요. 몇 개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200개 정도 됩니다.

○**장하나 위원** 200여 개요? 제가 세 본 것은 한 160개인데 뭐 비슷하다고 치고.

이런 사업이 과연 노동부에서 계속해야 될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저는 이 200여 개의 일자리도 어떤 기준으로 카운팅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청년노동자를 반드시 취업시키겠다고 약속한 일자리가 발굴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구직하고 있는 업체들을 그냥 우리가 카운팅을 해 놓은 겁니까? 확실히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제가 알기로는 우선 한인 네트워크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해외진출 기업 등을 통해서 현지 일자리도 발굴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로컬 기업들에 대한 정보도 발굴해서 청년들한테 널리 제공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하나 위원** 그러면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굴 일자리라고 했지만 반드시 한국인 청년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이런 약속은 아닌 거네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탐방단이 나갈 때는 목표를 그 기업들을 이미 인터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한국 근로자들이 이리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 고용하겠다는 하고 하는 의사를 타진하고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지금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상당히…… 나머지 계획 이행되는 것까지 봤지만 예상대로 너무 졸속적이고 형편없는 계획이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개 일자리를 구했고 17명을 데리고 가서 취업을 하는데, 2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게 우리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해외로 취업시키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효율이 있겠습니까? 계속 돼야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사실은 이게 작년만 했고 금년에는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탐방단 사업은 K-Move와 관련된 여러 가

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전산망 구축, 현지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당시 김상민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환노위 측에서도 현지를 한번 청년들이 가서 둘러보면서 자꾸 필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작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므로 단계적으로 서서히 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 사업은 한번 나름대로 좀 더 정치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효과를 과연 우리에게 주었는지.

○**장하나 위원** 향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충분히 납득됩니다. 이 결과를 보고 다시 이런 사업 못 할 텐데……

저는 또 이런 동종의 전시행정이 반복될까 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에는 좀 이렇게 뻥히 예상되는 그런 일들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이미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셨고 지적이 있었던 건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용부가 정말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해 온 사업의 하나가 취업성공 패키지였고요, 하나가 오전에 민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업성공 패키지와 관련해서 이것은 고용부 차관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2013년 9월로 보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취업성공 패키지는 다들 아시지만 어쨌든 고용보험을 가입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가 세금을 투자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훈련을 시키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게 확대가 되면 실업부조의 형태로 제도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

다.

그런데 훈련을 보면 일반 실업자의 경우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과 2유형을 나누어서 보면 4개 직종, 주로 사무라든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미용·숙박, 음식서비스 이 4개 직종이 대체적으로 사실은 저임금 근로가 있는 직종입니다. 그러면 거의 일반 실업자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을 받은 집중률이 그 4개 직종의 한 39% 정도가 되는데 취업성공 패키지가 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은 저임금 근로자를 정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로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어쨌든 다시 시장 진입을 저임금 근로의 형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저기에 과다 집중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2유형은 굉장히 다르지요. 노동부에서도 이 2유형은 굉장히 곤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평가를 해야 되는 유형인데 2유형도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지금 청년, 중장년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이든 똑같이 저 4개의 직종에 동일한 비율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률은 어떤가를 보면, 일반과 취성패에서 2013년을 보시면 일반, 그러니까 전체에서 29.9%인 반면 취성패는 23.0% 정도의 취업률을 보인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면은 있어요. 그런데 과다 직종에서는 그 취업률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성공 패키지 1유형은 사실은 시장까지 진입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2유형 같은 경우 사실은 청년이나 중장년은 다른 데하고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하나의 가설은 이런 겁니다. 원래 취성패 1유형으로 도입된 제도를 어쨌든 청와대든 이런 의견 때문에 취성패 2를 여기에 다시 덧씌우다 보니 사실은 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저런 모형이…… 결국 취성패 1과 취성패 2가 대상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약 저렇다면 저는 취성패 2, 특히 청년 그리고 중장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는

고용부가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만약 저런 게 계속 되다 보면 사실은 저것을 한국형 실업부조의 형태로 제도화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사실은 취성패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신 여러 가지 점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쟁점들을 정리를 해야 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희가 작년부터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굉장히 여러 번 장관님을 포함해서 TF를 구성해서 토의도 했고 했는데 사실은 1유형과 2유형이 각각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의 수행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위탁운영기관이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센터에 들어가면 센터에 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어서 어떻게 상담원들이 관리를 해야 이게 성과가 높아지겠느냐, 그다음에 취성패의 가장 핵심이 훈련인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뒤의 준비기간과 취업 알선 그다음에 일단 취업되고 나서의 유지율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최적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걱정하고 따져 봐야 될 점이 수도 없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큰 쟁점들을 놓고 사실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감 때쯤에는 위원님께 ‘많은 고민을 했으나 이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수미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감 때까지 한번 저희도 좀 따져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담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을 지금 지자체에 배속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것까지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이고 여러 사람들…… 제가 이분들을 인터뷰도 해 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후

해서 급여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지자체에서 다른 무기계약직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급여를 떨어뜨린다인데 그러면 무기계약직 문제가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들도 사실은 그 산하에 전문 직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괄해서 같이 쥐 버리는 거예요. 호봉도 없고 근속수당도 없고, 그래서 전환 후 급여가 더 떨어지면 이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헌신성, 봉사 정신, 정말……

그리고 제가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도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6개월을 추적할 해 가면서 이직까지 시켜 주고 정말 이분들 믿고 취업을 해서 자립을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런 분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해 가지고 급여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미 그런 점을 의식을 해서 지금 센터에 8개 직종의 비정규직들이 혼재해서 상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통합해서 단일 직군화 하면서 선임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경력에 따른 직급만 설계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호봉 급여표는 같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그 돈이……

○**은수미 위원** 또 하나, 지자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속된 분들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죄송합니다.

○**은수미 위원**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지금은 지자체 내용을 답변하신 것 아는데 제가 질의를 지자체 쪽으로 한 거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알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고용부에 소속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게 고용복지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쨌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장기적으로 저희 센터에 포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자체에 있게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제공해 가지고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규모는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300인 이하 사업장, 지원한도는 근로자는 1인당 600만 원, 사업장당 5000만 원인데 2013년 예산액 50억 원 중에 9억 7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40억은 불용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이 동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체불임금의 50%는 사업주가 선청산 조건이라는 걸 삭제했고 용자대상을 6개월 이내의 퇴직근로자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원인을 뭐로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무래도 체불을 할 정도의 기업은 대체로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어려울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서 돈을 쓰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임금이 1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렇지요, 예.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굳이 용자까지 해 가면서 근로자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받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아예 이번에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안을 제출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임채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용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점도 해 주시고, 또 내용면으로 봐서는 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취업 금융기관의 용자취급수수료 지금 1.5%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최봉홍 위원** 다른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 공공자금관리기금 0.5%, 에너지지원사업특별회계는 0.5에서 1.5, 근로복지진흥기금 0.6%, 환경개선특별회계 1.0%인데, 이것은 실제 약정에 의해 가지고 용자 미회수 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채권 양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가 실제로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춰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수수료는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간에는 저희가 체불청산사업 용자가 이게 워낙 사업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수료율을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용자대상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되면 사업이 커지기 때문에 용자취급수수료를 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 점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환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환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성 위원** 차관님, 아까 전에 연속해서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00%에 대한, 100%를 높이고 향후 5년간 그것을 동결시키겠다라는 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전해 드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공익위원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 사실 사회의 어떤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2014년 5210원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엔 5580원이 될 거고 7.1%,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편의점이나 커피숍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5200……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일이 힘들고 고되다 보니까 고용주 자체도 현재, 이것은 기사에 나온 겁니다. 현재 얼마를 주고 있다면 6200원에서 6300원을 주고 있어요. 거의

한 50% 이상이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내년에 또다시 인상을 하겠다, 10%에서 15% 인상을 해도 그게 사회에 그리고 그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수혜자한테 전혀 피부로 온도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향후 5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1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 이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저 혼자 떠드는 것이지요, 제가. 당연하지요. 이것 반영이 되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100%요?

○문대성 위원 예, 100%.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안 될 겁니다.

○문대성 위원 당연하지요.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익위원들도 마찬가지로이고 현 정부에 계신 분들도 탁상행정, 아까 전에 탁상행정 하신다고 차관님 입으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회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을 직접 한번 들어 보세요. 그 학생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좀 한번 보세요. 116만 원 받아서 8시간, 9시간 일해서 1학년·2학년 휴학하고 1년 동안 벌어서 500만 원도 못 벌니다, 160만 원 받아서. 고시원에서 숙박하고 그리고 김밥으로 삼시 세끼 먹고 그리고 다시 또 3학년·4학년에 또 입학하고 모자란 돈은 또 부모님한테 부탁하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최소한 본인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성인이 되면 등록금 하나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최저임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지난 2일 개최한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90여 개의 기업은 올해 30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습니까? 그것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박람회 때 10개의 주요 그룹에서만 1만 10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인원의 3분의 1의 수

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만 1000명을 채용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올해 한 채용박람회에서, 시간제 일자리 박람회에서 30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 숫자는 맞고요, 저희가 발표한 건 맞고. 이번에 나온 숫자는 작년에 일차적으로 박람회를 계기로 참여했던 대기업들이 아닌, 저번에 참여 못 했던 대기업들이 추가로 계획을 내신 거거든요.

○문대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사가 잘못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맞다고요.

○문대성 위원 맞는데……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러니까 작년의 1차 때는 1만 1000명이 얘기가 나온 거고 이번에는 3300명으로 나온 것이지요.

○문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줄어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글썽요, 저는 대기업들이 작년에 1만 1000명으로……

○문대성 위원 그리고 지원 자체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해서 급여의 2분의 1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대성 위원 시간선택제 근로자 급여 관련해서 2분의 1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여쭙 보는 겁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1년간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회사에서 다시 부담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것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겠어요, 이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저는 그런데 오히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선택제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이고 또 이 사회의 새로운 고용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라도 시간선택제로 지원을 받던 그 기업의 그 근로자가 2년, 3년이 지나도록 회사도 여전히 고용하고 있고 근로자도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원히 어떤 근로자를 채용시켜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금이 백업이 안 되면, 그만두는 사태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고용 형태가……

○문대성 위원 그런데 그 부담금이 순수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업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닌가요, 그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당연히 근로자를 고용했으니까 임금을 줘야 되겠지요.

○문대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계속 가중될 텐데……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제가 정말 그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는 자리로 세팅이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가이드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제대로 직무설계를 해 드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님 이야기는 이 시간제 일자리가 성공할 거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걸……

○문대성 위원 판단을 확신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이나 후년쯤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씨를 뿌렸던 그런 시간선택제 자리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또 유지되고 있는지, 근로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지 확인……

○문대성 위원 지난해의, 몇 달 전에 이 성공사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외에 또 반대 입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다, 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저희도 예의 주시하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한정애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성보호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에 우리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의 사회부담화 얘기를 할 때 이미 재정 형편상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고용보험기금에서 시작을 하자, 그러나 국가로 하여금 어쨌든 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해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대책 제도 개선을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이 정권이 벌써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모성보호 급여가 실업급여에서 나가는데 모성보호 급여가 나가는 액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조를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하남 장관께서도 노사에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 정도면, 그래서 올해 초에 아주 강력하게 해서 최소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지금 전체 비율이, 모성보호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로는 3.8%고요. 그냥 액수로만, 2006년 이후 계속 100억씩만 전입이 되었고 재작년에 150억 그리고 작년 2013년에 250억, 퍼센티지로 3.8%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까지 이것을 비율을 올리려면 노동부가 정말 강력하게 최경환 장관하고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좀 서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싸울 태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그런, 작년도도 이런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작년에 확대하려고 했고요.

특히 국정과제로 돼 있었던 ‘아빠의 달’을 또 고용보험기금에서 그냥 엄청나게 초래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게끔 돼서 그걸 저지하고 기재부하고 오랜 기간의 협의 끝에 지금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50억을 받았고 지금 내년도는 잠정적으로 450억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모성보호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를 드린다면 아예 이럴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으로밖에 어쩔 수 없이 안아야 된다면 별도의 계정을 하나 만들고 만들면서 일정 부분 노사정 협의를 해서 분담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비율을 아예 규정에 박아버리는 방법 같은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관계부처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올해 내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계속 추가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뭐냐 하면 이게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 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노동자, 남자건 여자건 육아휴직의 경우에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역시 또 사각지대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 줍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가 해 주는 건 제가 보니까 공무원·교원·군인이에요. 여기는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꿔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공무원 아이, 교원의 아이, 군인의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처럼 하고 사실은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에 있다는 사람들만 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왜 노사에는 욕을 들어가면서 전혀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국가가…… 원래는 한다라고 하고 합의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하는지, 이걸 좀 이번에는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지금 자꾸 돈이 줄어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비율 자체가. 원래 안정적인 기금을 가지고 있는 비율, 적정 법정비율을 못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현제도.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그건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고용안정기금 오히려 이걸 일자리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용안정기금을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아직 논의는 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고용안정기금은 아시다시피 출연을 100% 사업주만 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전혀 배네피트

(benefit)가 안 가는 그런 급여를 갖다가 거기가 넣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해당 노동자들이 어쨌든 그 해당 일자리에 계속 있게끔 하는 것으로 보면 고용안정기금이 쓰이는 것이 맞지 이게 실업의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요, 내년이 저희 고용보험 2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중대한 과제·쟁점들을 다 지금 전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모성보호 급여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시급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연구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각이, 답안이 어느 정도 떠오르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특정 직군에 해당되는, 즉 다시 말해서 공무원·군인·교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사를 포함한 그다음에 아예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고용부와 더불어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재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서 기획재정부와 뭔가 답을 좀 내서…… 어쨌든 최소한 우리가 여자 대통령이 있는 때 출산과 관련된 뭘가는 하나가 사회보험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관계부처랑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제가 준비해 왔던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차관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성보호 관련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돼 있던 부분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제 대폭 확대해

야 된다고 저희가 공약으로 냈었고 관련 법안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기금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충당할 수가 없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온다면 추진하겠지만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지금 이게 근거가 되게 미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계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 다. 관련해서 추가 답변해 주세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민현주 위원** 그리고 이후에 상당 부분 대폭 수정된 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보고된 걸로 받았 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대폭 수정된 안 을 보면 과연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고용노동부 가 시행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한 의문을 들게 하는 안입니다. 과연 어느 부부 가 특히 어느 남성이 이 남성 육아휴직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큰 의문점을 갖게 하는 수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제 가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작년에 기재부하고 협의 다 끝나서 시행령까지 지금 확정이 됐다고 저 는 알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되고 있지요? 그래서 내용이 어 떻습니까, 최종 확정된 내용이?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우선 육아휴직, 부부 가 있다면 아무나 먼저 육아휴직을 가면 되고요, 가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는 사람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달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통상임금의 40%를 지금 육아휴직비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달 만큼은 100%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해 냈습니다.

○**민현주 위원** 원안에서는, 원래 기본 취지는 누가 내든 첫 번째 육아휴직을, 남성이 육아휴직 을 쓴 첫 달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 하자, 왜냐하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가 장 큰 기본적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손 실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고려 했을 때 남성이 임금을 통상적으로 많이 받아서

그 임금손실분을 갖다가 다 감수하면서까지 육아 휴직에 과연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느냐라는 점 때 문에 남성에게 무조건, 남성이 쓴다면 첫 달은 100%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갖다가 마련을 했었 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그때 반대할 때는 왜 반대하셨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우선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데요. 100%를 하긴 하는데 아까 민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대 급여를 100% 주는 게 아니고……

○**민현주 위원**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상한을 150만 원 설정 을 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지 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여기까지가 합의가 돼 서……

○**민현주 위원** 상한선까지는 합의가 있었지요? 일정 부분 상한……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다 끝났……

○**민현주 위원** 그랬는데, 그때 초반에 남성이 육아휴직 쓰면 무조건 첫 달에 통상임금 100%, 상한선을 두더라도 100%를 주자는 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반대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것은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 다. 이 제도 취지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반대는 재원의 문제였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때 제가……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왜 이것을 우리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회계에서 해 줘라라고 기재부하고 너무너무 오랜 기간에 실랑이가 있었 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민현주 위원** 차관님, 잠시만요. 제가 고평 부 장한테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 분명히 반대한 안이 있었습니다.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그것도 지금 말 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재원의 문제였 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과연 남자들에게 육아휴직 을 가라고 하면서 첫달을 통상임금, 그때는 육아 휴직이 아니고 그냥 부인이……

○**민현주 위원** 출산 이후에 3개월 안에 한 달을 쓰면 100% 주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출산, 맞습니다. 부인의 출산기간에 남편이 한 달을 갖다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였습니다 휴가.

○**민현주 위원**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휴가를 한 달 주면서 통상임금 100%를 전액 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본설계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희의 시각으로는 시장적으로 전혀 이게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민현주 위원** 어떤 측면에서 작동이 안 될까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남성들이…… 아까 위원님도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부인의 임신 출산 때문에 한 달을 갖다 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선뜻 휴가를 줄 형편이 저는 한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희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두 번째는 그런 걸 하려면 근로자는 거의 각오를,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아마 그런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실효성도 없는데 급여수준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해 놨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현실성 있는 게 두 번째 갈 때 첫 달을 100%를 주는 쪽으로 설계를 하자라고 예산과 현실성과의 타협점을 만든 게 지금의 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현주 위원** 제가 국감 때 다시 한 번 집중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한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원안이 고수되어야 된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금 부분을 좀 더 보전해 주자라는 취지의 공약이었고 그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결정적인 부분이 훼손이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누군가가 육아휴직을 한 달을 쓰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만 첫 달에 통상임금 100% 지급입니다, 물론 제한이 걸리지요. 한계가 걸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100%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현행 규정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자가 먼저 쓰고 남자가 나중에 쓰는 게 부부경제적인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원하지 않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한 달을 써야 한 다라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남성이 두 번째 쓰면서 100% 통상임금을 가질 수 있지요. 이렇게 된다면 이 법안이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에서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가정양립이 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자라는 취지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훼손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고용노동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았던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이자스민 위원** 작년 예산 집행률이 1%도 안 됐습니다. 회사 경영 악화에 따라서 고용만 유지된 채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야심차게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제도인데 그런데 이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한 곳에 불과하고 235명의 근로자들에게 6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 수요 예측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 3000명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3000명이 지원 사업을 신청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런데 수요를 과다 예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때 당시 왜 그렇게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약간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휴업·휴직근로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때 제일 먼저 그나마 인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유급으

로 휴업수당을 주거나 휴직수당을 주면서 유지를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막 드려요.

○**이자스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회사를 거의 문을 닫아야 될 판국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무급휴직이라도, 돈은 못 주겠지만 아무튼 휴직을 해서 간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근로자를 유지한다고 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 저희가 또 한 번 나서서 근로자한테 이번에는 생계비를 드리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치는 기업이 과거에 쌍용차나……

○**이자스민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런 경우같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사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딱 하나가 팬택이 이것에 해당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혹시 그래도 유급휴직을 못 하고 무급휴직까지라도 해서 근로자를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저희가 예비비 차원처럼 딱 버티고 있다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너무 불용액 위주로만 보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자스민 위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동사업과 유사한 아까 말씀하신 고용유지 지원금과 지원요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네 단계만 거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하려면 무려 7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원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들의 생계유지 지원금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원요건을 완화를 하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고용유지 지원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고용유지 지원은 일차적으로 사업주, 사업장을 위한 지원이고 무급휴업·휴직 지원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따라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도 상향 조정하고 지금 지적하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여쭙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문화예술제 사업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3만 127명이 본 사업에 참가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종합문화예술축제 한마당으로 위상을 정립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부 사업 중 수상자 해외체험 내용이 있는데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지가 의문인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서도 이 문제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솔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또 여기에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근로자가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솔자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그것은 됐고요. 해당 사업이 예술제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인 것이라면 단순히 수상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사회적 약자나 영세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높이는 것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사실상으로는 우리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수많은 인솔자가 같이 따라가는 것보다 가족 중에 누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사스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시간입니다만 201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늘 이것을 채택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차관님, 제가 지금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과정에 관련해서 여쭙 보려고 그러는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그렇게 생각보다 성과가 잘 안 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랬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건강보험을 자동으로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 이런 것 하나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기피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것 플러스 빈번한 사업장의 생성과 소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래서 저희로서는 EITC,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세원 정보를 저희 고용보험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는 일단 당연히 가입되었어야 될 사업장이 안 가입하고 있는 실태를 명확하게 우선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이인영 위원 EITC를 활용하면 그게 드러나나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설계……

○이인영 위원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대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EITC를 통해서 확인이 되나?

하여간 좀 보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적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어서요.

○이인영 위원 다시 또 좋아지는 추세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연말까지는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연말에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원액이 제한적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50%밖에 안 해서 그렇다 이런 거, 그건 변명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것도 저희가 아직 발표 단계가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근로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차별화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저임금에 거의 임박한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한 80 그다음에 중간 이상 수준 되는 부분은 한 50%로 이렇게 다변화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혹시 건강보험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재정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더라고요. 이걸 추가를 하면 제 기억에는 한 6000억 이상 소요가 추가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에서는 너무 무리라는 논의가 지배적이어서 아직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기재부나 이런 데서, 산업계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이해관계 기관끼리 회의를 많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인영 위원 끝으로 그냥 단순히 여쭙 볼 건데요.

아까 신규가입자하고 기 가입자의 구분을 없앤다 그러셨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없애는 게 아니고……

- 이인영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구분 기준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인영 위원 그러면 신규가입자의 기준이 뭐냐, 기 가입자의 기준이 뭐냐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 이인영 위원 저는 신규가입자하고 기 가입자의 구분을 없앤다 그러는 줄 알고……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이인영 위원 이게 무슨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얘기인가 그래 가지고, 아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식으로 제가 얼핏 들어 가지고……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저는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 이인영 위원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 이인영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국감 할 때 더 여쭙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이인영 위원님이 질의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갑갑한 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진 건 이 기초연구에 저 역시 연구자로 참여했었어요. 2007년에 고용부하고 전혀 무관하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으로서 그냥 제가 있었던 연구원에서 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나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보험까지 다 주고 아까 말씀하신 전감효과를 가지는, 사다리형으로 즉 전감효과를 가지는 방식으로 최소 7500억 정도를 처음에 세팅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게 보고서에 나왔는데 2008년 이후에, 과한 발

언일지 모르지만 그걸 저희들이 전혀 개입을 못한 상태에서 세팅을 하셨지요, 고용부에서. 그리고 돈은 돈대로 다 들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의 효과를 못 본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세무사 문제도, 그 당시 2007년 기초연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홍보나 여러 가지 전달통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세무사가 고용보험사업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개정을 해 드린 거예요. 기본을 거의 다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기본설계, 거기에서 했었던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이걸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특히 처음 설계에서 분명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나 소득보장 사업이나에서 후자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소득보다 기 가입자한테 돈 얹어 주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없고 소득보장을 일정하게 더 해 주는 소득보전 효과가 있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원래 설계에서 지적이 됐었던 바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걸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2007년에 했었던 건데, 결국 몇 년이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제도설계를 어떻게 하고 세팅을 어떻게 해서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가. 이걸 저는 고용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단추 잘못 끼운 거.

그다음에 EITC 문제는 물론 떠들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통계를 떠들어봐야 된다는 건 알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EITC 통계하고 이 통계하고 중복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쪽이 좀 더 많은데 어쨌든 한 번은 떠들어봐야 되겠지요, 실제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열고 이걸 원래의 취지대로, 이걸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처음에 쏟고, 재정을 쏟아도 되는 이유는 사각지대가 해소가 되면 돈이 더 들어와요. 재정부담이 없게 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7500억에서 많으면 1조 2000억까지 쏟아도 그 이상이 나중에 재정 충당이 된

다라고 설계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득보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거 하나고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고용부에서 고용모델과 노사관계 모델의 전환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기재부장관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이름을 고용노동부라고 바꾼 고용부가 자기 자신의 고용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는가, 저는 이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용모델은 이런 거잖아요. 고용률하고 불평등을 가지고 보면 이거 곱하기 이 테이블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용률 증가하고 불평등 증가하는 모델, 고용률 증가하고 불평등 감소하는 모델, 고용률 감소하고 불평등도 감소하고, 고용률 감소하고 불평등은 증가하는 이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한국은 고용률 증가하는데 불평등은 더 증가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간제일자리 정책이 어떤 거였는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기 입장과 정책이 나오셔야지 이 정책의 전환이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 모델도 그렇습니다. 단단계 아웃소싱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존의 노사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까, 더 나아가서 전교조 문제까지 발생한 이 마당에? 그러면 하청까지를 포함한…… 심지어는 근로자영자까지 만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노사관계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전략이 나오셔야지요. 저는 이 문제를 이제는 고용부답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답변 올릴까요?

○**은수미 위원** 예.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7년에 지금의 이런 문제 발생을 다 예견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과문해서 몰랐는데 바로 벤치마킹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 번 현재 시점에 맞춰서 어댑테이션(adaptation) 해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팀이 했습니다. 저는 참여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게 아무튼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에 관한 고용부 나름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부 내부에서도 금년 연초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으로는 이런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는 노사관계 질서를 만들 수 없겠다라고 보고 그런 것에 관해서 신고용노동 비전과 전략을 위한 포럼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부 내부에서 TF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몇 번 했고, 그다음에 포럼을 구성해서 이 달 말부터 발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정노동시장이라든지 효율적인 노동시장이라든지,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최저임금이나 도급이나 파견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아울러 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 정책으로 변화되고 또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성 위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금 한 4~5년 정도, 5년째 시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5년까지는 안 되고……

○**문대성 위원** 4~5년 그 정도. 그런데 보니까 매년 불용액이 생겨요. 차관님, 불용액이 계속 생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문대성 위원** 아까 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시간제선택제 일자리가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문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4~5년째 시행이 돼 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직 4~5년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문대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시간제일자리……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시간선택제에 대한 지원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문대성 위원** 작년부터……

그래서 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전환 부족, 까다로운 지원요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기업 수 감소거든요. 갈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기업 수도 감소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 주요 그룹에서 1만 1000여 명 채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 실제 채용한 인원은 6500명, 당초 계획의 60%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대기업에 좀 강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그러면 강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부담을 안고 대기업에서 준비를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0%밖에 못 미쳤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한테도 부담이고 또 정부도 불편한 관계가 계속 지속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면 진짜 안 되고요. 제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과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적어도 이 제도에 의해서 초년도에 취업한 분들이 어떤 일자리에 분포돼 있으며 실제로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 기업들은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을 건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문대성 위원** 한번 점검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작한 지 한 3년차 사업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맞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런데 예측이 189만 명인데 140만 명으로 크게 미치지 못했나, 이것도 맞습니까? 수혜인구를 189만 명 정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140만 명……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그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저희가 이걸 처음에 추계할 때는 기재부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거한 숫자로 추측을 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다소 이 건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약간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문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에 비해서 실적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이유로 한 8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문대성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또 170억이량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결하거나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한 170억이 더 올랐네요. 그 불용액이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일단은 금액이, 저희 지원기준도 올랐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입니다.

지원금액이 임금을 130만 원에서 135만 원 미만 근로자로 5만 원을 인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늘었고요.

그리고 불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년도기 때문에 추계상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은 다시 조금 더 조정해서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대성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준비한 게 한 일곱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거의 불용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측조사가 굉장히 많이들 빗나간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전적으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같은 지적을 내내 많이 받았던 부처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불용액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문대성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줄여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대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차관님, 실업급여사업 가지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민현주 위원** 거기서 재취업수당 집행실적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2013년 결산현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직업능력개발수당 같은 경우와 구직활동비지원 같은 거 17%, 2.5%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지요?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민현주 위원** 실업급여사업 평가 안 하셨어요, 2013년도 거?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실업급여사업 가지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2013년도 실업급여 결산현황을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게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랑 구직활동비, 그다음에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집행이 23%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구직활동지원비 2.5%,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이 17%,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지금 현재 실업급여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업훈련계좌제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련연장급여와 관련된 제도는 사실은 실업급여 설계 당시에 한

2년 정도까지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생계보장을 해 주면서 기능습득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토록 설계는 돼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계좌제훈련이 실시되면서 그 부분만큼은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민현주 위원** 그래서 표를 보니까요,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표입니다. 최근 5년간 훈련연장급여·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 수를 보니까 17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거 있으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보고요. 다만 당초 설계된 내용의 의미와 지금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이나 구직자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20주년……

○**민현주 위원** 이것도 기준 변경하실 거예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실업급여 제도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면서 제도상의……

○**민현주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시행했는데 이제 와서…… 17명 되어서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검토해서 연구를 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할 때 죽 분류를 하지요? A·B·C·D형, 미분류도 있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B형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상담 및 훈련지시가 필요한 자’ 이렇게 해서 직업훈련만 시키면 취업이 가능한, 일자리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취업의욕도 있고 일자리도 있는데 기술이 부족하니까 기술훈련시켜서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매치시켜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규모를 보면 상당히 커요. B형에 분류되는 분들이 2009년도에 10만 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30만 명까지 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수급이 이렇게 적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그 부분 이렇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형분류는 지금 현재 상담과정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훈련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계좌제훈련으로 연결해서 그 B유형 대상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전체 이직자 중에 실업급여를 받

는 분이 한 2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훈련연장급여는 2년간 구직급여를 주면서 훈련을 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정책적인 관심은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조금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훈련연장급여는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제도 부분은……

○**민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시든지요. 예산을 받아서 쓴 것은 20%도 채 안 되게, 2.5%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되는 분들은 이렇게 규모는 크고요, 30만 명에 이르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업을 재설계하시든지 아니면 폐지하고 다른 사업 예산으로 옮기시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결산에서 저조한 실적, 저조라는 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방치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문기섭**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제도설계 내지는 예산편성 시에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또 청년고용 관련 사업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든가요, 이것도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는 계속 현상은 최초로 인턴 채용한 규모가 2011년에 3만 2000명, 2012년에 3만 6000명, 2013년은 4만 4000명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인턴 6개월 할 동안 월급여에 65만 원씩 지원하고 이후에 정규직 전환되면 그때는 고용지원금인가로 이름을 바꿔서 또 6개월 동안 임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지 않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장하나 위원** 그런데 노동부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이 표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 종료 후에, 그러니까 12개월 동

안의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이 계속 유지된 사람을 59% 정도로 통계를 내 오세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한 게 ‘이걸 최초로 인턴 채용했을 때 지원한 사람들로 계산을 하면 40%가 안 된다. 37% 수준인데 왜 실제 현황을 알 수 있는 식으로 구하지 않고 퍼센트만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드시냐?’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턴일 때 6개월 동안, 그리고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월급여에 65만 원씩을 따박따박 지원하고, 거의 4만여 명 이상인 이런 청년들한테, 그런데 그 지원이 끝난 후에도 이 고용이 유지된 사람들을 팔로잉해 보니까 37%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년 예산이 874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청년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제고가 안 된 이유가 12개월 동안 사업주들이 지원은 받는데 이후에 이 청년들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계속 나라에서는 예산 투입을 하고 중소기업 인턴들한테 월급 보조는 해 주는데도 결국 고용률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지적을 드렸어서, 이번에는 채용규모가 그래도 8000여 명 늘어났으니까 사업규모도 되게 확대가 됐는데, 물론 결과가 좋기를 바라지만, 여기에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별 묘안이 없으면 이 사업도 이렇게 계속 반성 없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라 가지고 결과치가 안 나왔지만 저는 올해 예산집행에서 결과까지 보더라도 별로 제고될 사항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차관님, 어떠한 내부적인 평가와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지금 지적하신 상당부분의 말씀들이 다 공감이 되고요. 다만 중도탈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꼭 인턴 참여했던 최초의 사람을 분모로 하고 계산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면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말하자면 최초 참여자 대비 6개월이 넘도록 유지된 사람 또는 인턴을 완전히 마친 후에 또 몇 %인지, 그다음에 인턴을 마치고 취업을 한 후에 몇 %인지 이런 식으로 다변화해서 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은 어떤 식으로든지 유지했다가 그 후에 결국은 만약에 되돌아간다면 사실은 이거는 국가가 그냥 단기고용을 반복하고 있는 스타일로 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선은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부터 주의를 기해서 근로조건이 정말로 괜찮은 강소기업인지 엄격하게 좀 따져 보고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장하나 위원** 이 사업이 반복되면, 그러니까 같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3만여 개, 4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말 한 줄 쓰려고 800억 썼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부끄럽거든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아무튼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아까 최초 인턴 6개월의 중도탈락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인턴들하고 또 얘기를 해 봐야 되지만, 쉽게 말할 수는 없는데 거기 탈락률도 벌써 40%에 육박하면 어느 정도 인턴기간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수한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남는 예산들을 이후에 정규직 전환 후로 돌리든지 그런 변화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런 사업은 접자 이런 말씀을 저는 사실 드리고 싶어요. 몇 년 해 봤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죽 해서 거의 1년에 한 1조가량 요모조모 우리 청년고용 관련된 정책들 했는데 그 고용률이 그대로면 1조씩 그냥……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라 말씀을 또 드렸고요. 이 역시도 차관님하고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

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보니까 산재보험급여 불용액이 1680억 원이나 됩니다. 이 많은 돈이 불용될 게 아니라 산재 인정 기준을 좀 완화해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예방사업도 95억 원이나 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는 세월호 참사나 또 대형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과 예방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차관님, 불용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말씀하신 산재보험급여 부분의 1680억의 급여 불용액은 저희가 추계를 할 때 매년도 산재 발생, 전년도에 한 것들이 금년도에 환자로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고 나는 것, 그다음에 누적적으로 계속 돈을 받아 가는 연금 환자 이런 것을 다 계산하는 건데, 그 추계가 한편으로는 약간 과도하게 추계가 됐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완만한 속도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산재발생률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렇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근로자들이 그래도 아직도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금년도 예산을 잘못 추계했다면 노동부에서 작년에 예산을 잘못 짰 거네요?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약간 과다 추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옥** 예.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보고에서 모성보호급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글로벌 취업 지원, 기간제 일자리, 각종 기금의 운용 문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많은 현안 사안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개선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차관님은 물론이지만 담당 실·국장들도 정확하게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팽팽 얼어붙어 있고 저소득층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진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담당자들이 검토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변명으로 이 자리만 모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검토하고 확인하고 살펴보겠다고 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속기록 보시면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가지고 각 의원실하고 위원장실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현안들은 최근 불거진 사안들이 아닙니다. 모성보호급여 문제는 2001년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부대결의안에 합의한 바도 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매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서 좀 긴장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정현욱 예,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에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양창영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그리고 본인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감사 일정에 대하여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15일까지 제출해야 함에 따라 7월 15일 9시 반에 우리 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문대성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이인영 간사님, 은수미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공식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한정애 위원님도……」 하는 위원 있음)

한정애 위원님 나중에 들어오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도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성동	김영주	문대성	민현주
양창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이인영	이자스민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관	방	하	남
차	관	정	현	욱
기획조정실장		심	경	우
고용정책실장		이	재	홍
노동정책실장		권	영	순
인력수급정책국장		박	화	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안	경	덕
노동시장정책관		정	형	우
직업능력정책관		나	영	돈

고용서비스정책관	문	기	섭
고령사회인력심의관	이	수	영
근로개선정책관	권	혁	태
노사협력정책관	임	무	송
공공노사정책관	송	문	현
정책기획관	김	종	열
대변인	임	서	정
감사관	조	병	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	대	환
중앙노동위원장	박	길	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	재	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	영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	현	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	승	규
한국고용정보원장	유	길	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	재	구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	현	택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이사장	박	종	구
한국잡월드이사장	장	의	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획처장	진	경	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	진	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7. 1 이인영 · 이상민 · 안규백 · 전순옥 · 김광진 · 정성호 · 장하나 · 조정식 · 유은혜 · 이해찬 · 윤후덕 · 서기호 · 오영식 · 남인순 · 김승남 · 김재운 · 박남춘 · 이목희 의원 발의)

7월 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4. 7. 4 전해철 · 부좌현 의원 외 124 인 발의)

7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